

# 2018년도 제6회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내역(2차)

## 【당초】

### 6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

#### (2) 직군(직렬)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

-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(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구 분	연구사, 지도사		일반직 9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## 【변경】

### 6.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

#### (2) 직군(직렬)별로 적용되는 자격증 가산비율

- 국가기술 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분야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(아래 표에 정한 가산비율)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

구 분	연구사		지도사, 일반직 9급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가산 제외*
가산비율	5%	3%	

\* 근거법령: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

## 【변경사유】

-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7조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제2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 가산 제외됨에 따라 변경 공고

「지방공무원법」제27조(신규임용)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(이하 “경력경쟁임용시험”이라 한다)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, 제4호, 제5호, 제7호,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.

2.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**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**

「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제17조(신규임용시험의 특전)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「국가기술자격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2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 공무원(연구사, 지도사, 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을 포함한다) 신규임용시험(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, 별표 6에서 정한 직류와 **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**한다)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1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보탬 한다.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고점의 범위 내에서 합산할 수 있다. 단, 동일 기술·기능분야에 등급만 다른 자격증의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보탬한다.